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 -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구합504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청장
변 론 종 결	2020. 9. 24.
판 결 선 고	2020. 11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12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5,281,360원, 지방교육세 12,642,100원, 농어촌특별세 5,263,140원[1]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) 소장 청구취지의 '5,236,140원'은 '5,263,140원'의 오기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1. 2. 21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·관리하고,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육영사업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한 어린이집(국공립, 민간 등)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.

나. 원고는 2014. 4. 11. [redacted]구 B외 24필지 상에 노인요양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종합복지타운 2동(그중 영유아보육시설을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대한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, 2016. 1. 12.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.

다. 원고는 2016. 2. 23.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법'이라고만 한다)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복지시설(국공립어린이집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17,076,700원, 지방교육세 1,862,910원, 농어촌특별세 776,210원만을 납부하였다.

라. 그런데 원고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건물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고 하였다가 피고가 2016. 3. 28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 공고 C로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[redacted]구 D동 일대를 민간어린이집 인가가능 지역에서 제외하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. 10. 13. 원고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을 승인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. 12. 12.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7. 3. 1.부터 2027. 2. 28.까지로 하여 10년간 무상임대하고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협약(이하 '이 사건 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마. 피고는 2017. 1. 13. 이 사건 건물에 'E어린이집'(이하 '이 사건 어린이집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신규인가를 한 후, 제3자인 F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.

바.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, 2018. 12. 5. 원고에게 법 제178조 제1호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 135,281,360원(가산세 38,513,390원 포함), 지방교육세 12,642,100원(가산세 2,085,600원 포함), 농어촌특별세 5,263,140원(가산세 864,600원 포함)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사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. 2. 21. 이의신청을 거쳐, 2019. 7. 26.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9. 11. 7. 이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15~17, 을 1, 2, 4, 6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1)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제3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얻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, 법 제178조 제1호의 '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'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2)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구 영유아보육법(2016. 2. 3. 법률 제14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3조 제1항의 인가를 받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거나 1억 원 상당의 안전보강 공사도 마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, 민간어린이집 수급계획상 피고의 인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.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·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법 제178조 제1호의 '정당한 사유'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'직접 사용'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가)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).

나)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나, 법 제178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'직접 사용'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. 이때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'직접 사용'에 관하여 '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에 맞게 사용하는 것'으로 정의하는바, 위 '직접 사용'에 대한 정의규정은 취득한 재산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, 위탁 등으로 제3자가 사용하더라도 '직접 사용'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것으로, 취득한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그 사용 주체를 '소유자'로 한정하여 취득세 면제가 인정되는 범위를 개정전보다 제한하고 있다.

다) 위 법리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는 2016. 1. 12.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고, 2016. 12. 12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, 피고가 2017. 1. 13.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제3자인 F에게 이를 위탁 운영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에,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의 주체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이상, 이를 원고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원고는 법 제178조 제1호의 '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'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라)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법 제178조 제1호의 '정당한 사유'가 존재하는지 여부

가)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,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, 취득 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,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).

나)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고, 제2 내지 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 · 가정어린이집 · 직장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(위 제2 내지 7호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하 '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'이라 한다)을 규정하고 있다.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경우 이를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(제1항),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.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다)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갑 13,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피고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,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19조에 따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는데, 2014년도 · 2015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에서는 G동(D동을 포함하는 행정동이다)이 인가가능 지역에 포함되었었으나 원고는 추첨과정에서 탈락하였고,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에서는 아예 G동이 인가가능 지역에서 제외되었다.

② 원고는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육영사업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한 어린이집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기에, 영유아보육법상 민간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피고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인가는 구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수급계획 공고의 내용 및 신규인가 추첨 경쟁률에 따라 좌우되는바, 보육시설 포화상태 여부 및 어린이집 간의 추첨 경쟁률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었다.

③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 신고, 납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임대하기로 하는 협약을 2016. 2. 말까지 체결하고, 2016. 8.경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'(E어린이집)시설유형에 따른 개원 및 운영보고서'를 제출하기도 하였다.

④ 그런데 이후 원고가 입장을 바꾸어 민간어린이집 설치 · 운영을 모색하다가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에서 G동이 인가가능 지역에서 제외되어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불가능해지자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고, 이에 원,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2개의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, 원고는 그중 제2안을 선택하여 피고가 선정한 기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이 위탁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다.

○ 제1안: 총 임대기간 18년, 원고가 9년간 운영, 이후 피고가 선정한 기관에서 9년간 운영 ○ 제2안: 총 임대기간 10년, 피고가 선정한 기관에서 10년 운영

⑤ 이때 원고가 위 제1안을 선택하여 처음 9년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맡았다면 법 제178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2안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한까지 제3자가 가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고, 이는 그러한 방안을 선택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"직접 사용"이란 부동산·차량·건설기계·선박·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·차량·건설기계·선박·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)

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

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<이하 생략>

제178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■ 구 영유아보육법(2016. 2. 3. 법률 제14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

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"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부모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,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2-29

여야 한다.

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)

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각호 생략>

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
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끝>